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성진
재정경제부 차관보
대한민국 과천

김현중 본부장 및 김성진 차관보 귀하,

본인들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3장(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경간 무역

양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그리고 건전성 규제에 대한 그 밖의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금융 상품의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한다.

신금융서비스

양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건전성 요건과 합치되게 자국 시장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제13.6조(신금융서비스)가 (1) 국경간 금융 서비스무역 또는 (2)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투명성

양 당사국은 제13.11조(투명성)제9항에 규정된 신청 및 허가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당사국의 현행 관행이 그 조에 합치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제13.11조제9항의 120일 기간은 신청자가 관련 허가에 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보험의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관행은 90일 이내에 신청에 관한 예비결정을 내리고,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험서비스 공급 신청에 관한 예비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존 90일의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자국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자율규제기구

양 당사국은 보험개발원이 제13장(금융서비스)에 정의된 자율규제기구이며 제 13.12조(자율규제기구) 원칙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이 서비스분야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하위분야에 속한 모든 기구의 지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그 기구 또는 다른 비정부기관이 위임받은 기능에 따라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13.11조(투명성)제3항 및 제21.4조(재심 및 불복청구)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일정 정부 기관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최고 경영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이전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에 의한 국경간 정보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미합중국은 부속서 13-가 제6항나호 및 부속서 13-나 제2절에서 그러한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도록 허용할 자국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그러한 개정이 미합중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금융서비스 이니셔티브

자국을 동아시아의 지역 금융허브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 나. 방카슈랑스 규정 제2단계의 이행, 그리고
- 다. 보험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미합중국이 상품 승인 제도에서 취한 긍정적 조치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보험의 전자 상품 승인 신고 절차 분야에서 도입된 효율성을 환영한다.

- 가. 미합중국의 모든 지역정부가 2005년 말까지 약 185,000건의 전자신고를 기록한 전미보험감독관협회의 전자 보험 및 서식 신고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 나. 29개 주는 상품규제위원회가 생명·연금·장기 요양 및 장애소득보상 영역에서 상품 승인을 위한 유일한 당국이 되도록 허용하는 주간 보험 협약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재보험 공급자에 대한 담보요건의 검토에 관한 전미보험감독관협회의 진전을 환영한다. 전미보험감독관협회는 2007년에 그 협회의 모범법에 대한 변경을 채택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그 진행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되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임을 인정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가.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서비스 공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위원회 및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최소한 절반을 추천한다.

나.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결산서류 또는 그 밖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검토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밝혀진 한도에서, 우정사업 본부에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상품에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 하는 경우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제시한다.

3. 우정사업본부는

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재무제표·결산 서류 및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자신의 보험서비스 공급을 제2항나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합치시킨다.

다. 기초서류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다호에 따라 제시한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기준 제61조제4항 및 제6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획득한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나호 또는 제2항다호에 따라 의견 또는 권고를 제시하는 경우, 기준 제64조에서 규정된 대로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바. 제2항가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를 위하여 추천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우정사업본부가 자신의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그러한 광고는 민간 보험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승인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5. 우정사업본부는 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상품을 수정¹⁾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렇게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8절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2항다호에 따른 권고를 제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가액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 감독위원회는 그 인상안을 공표하고 공중 의견제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감독위원회는 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인상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달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신의 조치를 그 의견에 합치시킨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부속서 13-다(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설치되는 보험작업반은 부속서 13-라(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와 이 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7. 이 서한의 목적상,

가. **금융감독위원회**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승계 기관을 말한다.

나. **보험개발원**이라 함은 보험개발원 또는 승계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다. **기준**이라 함은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우정사업본부고시 제

1) 제5항의 목적상, 수정은 보험업계의 최선의 관행에 합치시키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약관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정은 새로운 상품유형의 창설과 동등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보장을 더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상품유형이라 함은 현재 보장되는 위험 이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수정은 또한, 새로운 상품의 창설과 동등한 방식으로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18호)을 말한다.

8.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항 내지 제7항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하여 협의한다.

본인들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미합중국 무역대표

/서 명/

클레이 로어리

국제업무담당 차관대행

미합중국 재무부